

설비유지보수 계약서
(on-call)

SAMSUNG ELECTRONICS

08080157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주식회사 원익홀딩스(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다음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자”가 소유한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이하 “업무”라 함)를 의뢰하고, “수탁자”가 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상호 간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유지보수”라 함은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설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의 요청 시마다 이를 보수하여 정상가동 시키기 위한 일체의 정기 또는 비정기 점검 및 고장 발생시의 보수작업을 말한다.
- ②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상표권 및 MASK WORK, LAYOUT, Software, 영업비밀, KNOW-HOW, 기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③ “결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을 말한다.
- ④ “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공된 기술·데이터·실험자료·아이디어·사양·KNOW-HOW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유·무형 자료와 본 계약을 수행함에 따라 지득하거나 발생된 개발결과물의 기능·기술·데이터·실험자료·아이디어·KNOW-HOW·지식재산권·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유·무형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업무위탁기간)

- ① 본 계약에 따른 업무위탁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위탁인” 또는 “수탁인”이 업무위탁기간 만료 1월 전까지 계약의 종료 또는 계약 변경의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위탁인” 또는 “수탁인”이 전항에 따라 계약 변경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신규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효력이 신규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된다. 단, 신규 계약이 체결되면 본 계약에 따른 업무위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대금은 신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재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범위)

- ① “수탁자”가 유지 보수할 설비의 범위 등 업무의 범위는 별첨1. “유지보수업무 수행계획”에 기재된 바와 같다.
- ② “수탁자”는 설비가 최적의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수행 등)



- ① “수탁자”는 본 설비 최초 구입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며, 그 이외에 “위탁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위탁자”의 사업장 등 재산에 대한 시설관리권 및 정보보호정책 등에 기반한 “위탁자”의 내부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그 직원이 “위탁자”의 내부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 ③ “수탁자”的 업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첨1. “유지보수업무 수행계획”에 따른다.
- ④ “수탁자”는 “위탁자”的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부품을 반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수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 (상호 협조 및 자료제공)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관계자료의 제공 또는 기기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업무의 수행과정이나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정기적인 회의를 요구하고 담당자를 회의에 출석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유지보수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 받은 경우 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결과의 검수)

-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한 후 “수탁자”가 제출한 작업결과보고서를 기초로 검수를 한 후, “수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② “수탁자”는 검수에 불합격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검수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대금지급)

-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위탁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위탁자”는 이를 확인한 후 “위탁자”的 대금지급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1. 대금청구서
 2. 작업결과보고서
 3. 거래명세표(납품서)
 4. 세금계산서
 5. 기타 위탁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
- ②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할 대금은 별첨1. “유지보수업무 수행계획” 및 별첨2. “대금지급 조건”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지급하는 대금은 식비, 교통비, 준비시간, 대기시간, 국내 출장비 등 “수탁자”的 업무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



이다.

- ④ “수탁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해외출장이 수반되는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추가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가 제7조에 의한 검수에 불합격할 경우 “위탁자”는 검수에 합격할 때까지 “수탁자”에게 당월 지급할 해당 계약 대금을 유예할 수 있다.
- ⑥ “수탁자”가 대금을 외화로 청구할 경우 “위탁자”는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적용되는 환율은 업무 종료일 당월 1일자 한국외환은행 최초 고시 매매 기준율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업무 지역에 대한 책임)

“수탁자”는 별도로 합의한 시간 이내에 업무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실제 작업시간에서 지체시간을 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처리기준은 별첨1. “유지보수업무 수행계획”에서 정한다.

제10조 (교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리되었거나 교체된 부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일정, 교육대상인원, 교육범위, 교육비 등은 별도로 협의한다.

제11조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결과물” 및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위탁자”的 소유로 한다. 단,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수탁자”에 의하여 이미 개발된 기술 및 본 계약 이후 “수탁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기술의 지식재산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제3자에 대한 보증 및 면책)

- ① “수탁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나 그 이행결과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 ② “수탁자”는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위탁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사용하되, 제3자가 향후 “위탁자”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서면을 받아 “위탁자”에게 권리 사용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위 서면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제11조의 “위탁자”的 지식재산권을 제외하고 본 계약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결과 제3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위탁자”와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수탁자”的 비용과 책임으로 “위탁자”를 방어하여야 하며, 분쟁이나 소송으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는 위 분쟁이나 소송의 발생, 진행사항을 즉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전항의 경우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업무가 완료된 결과물을 “위탁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거나 결과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대체 혹은 수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불가항력)



- 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행지체 또는 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② 불가항력이라 함은 홍수, 지진, 폭풍, 전쟁, 혁명, 정부의 규제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수행이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 ① “수탁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상대방의 정보를 본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수탁자”는 본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별첨4. 비밀보호서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관련 임직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 혹은 제공(제3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면서 공개하는 행위 포함) 할 수 없다.
- ③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업무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간 유효하다.
- ④ “수탁자”가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년도 총 거래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관련된 내부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상대방 정보의 보호, 중요성, 책임 등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⑥ 본 계약이 기간 만료, 해제 또는 해지 등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및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폐기하여야 한다.
- ⑦ “수탁인”은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인”이 언제라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위탁인”의 모든, 유무형의 정보자료를 “위탁인”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위탁인”에게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 ① “위탁자” 와 “수탁자”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수탁자”의 임직원 및 “수탁자”가 사실상 사용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 중 습득한 상대방의 기밀 누설
 2.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시설, 물품 및 집기 등의 폐손 및 도난
 3. “위탁자” 또는 “수탁자”에 대한 음해, 비방 및 선동 관련 일체의 행위
 4. 배임 행위 또는 사기, 횡령 등 형사상 범죄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의 이행 거부
 6. 기타 본 계약 업무 및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수행의 방해
- ③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 중 어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2.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시작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4. 가압류, 가치분 등을 통하여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횡령 등 금융사고로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6. 분쟁, 집단퇴사 등으로 인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7. “수탁자”가 본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서류의 중요 부분이 허위, 과장 또는 부실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8. “수탁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개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9. 상대방의 평판 등 대외 이미지를 중대하게 훼손시킨 경우
 10. 본 계약 체결 후 “수탁자”가 합병, 분할, 주요 사업 또는 자산의 매각이 있거나, 상호 변경, 대주주가 변경되어 본 계약상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 중 어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14일의 기간을 두고 그 시정을 최고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서면통지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위탁자”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的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수탁자”的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본 계약과 관련된 설비의 부품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 요청을 받은 경우 “위탁자”와 성실히 협의하여 “위탁자” 소유의 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안전조치)

- ① “수탁자”는 본 계약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구 착용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안전 또는 위생상의 위험, 유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알리고 신속하게 가능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본 계약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직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본 항의 활동을 실시할 안전 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현황(사고발생개요, 사고처리 내용, 공단 승인 여부, 소송 경과 등)을 위탁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위탁자가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④ “수탁자”는 본 계약상 업무에 필요한 법적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법령상 환경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환경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본 계약상 업무 수행 시 “위탁자”가 요구하는 환경안전 공통사양에 적합하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등의 작업 시 “위탁자”의 환경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자”는 “위탁자”의 본 계약상 업무 수행 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사용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에 사전에 통보하고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의 사용금지, 폐기, 삭감에 관한 대응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 ⑦ “위탁자”는 환경 안전을 위하여 “수탁자”가 본 조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위탁자”에게 제공한다.
- ⑧ “수탁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9조 (경영권의 변동 등)

본 계약 체결 후 “수탁자”가 합병, 분할, 주요 사업 또는 자산의 매각이 있거나, 상호 변경,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수탁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위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에 기명날인 한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 (기타)

- ①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내용 중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써 해결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따른다.
- ② 본 계약 이전에 서면, 구두로 본 계약과 관련한 합의사항들은 모두 무효이고, 본 계약에 규정된 내용만이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으로서 유효하다.
- ③ 별첨 문서 일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별첨1. 유지보수업무 수행계획

별첨2. 대금지급조건

별첨3. 작업결과보고서

별첨4. 비밀보호서약서

별첨5. 자료제출요청서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9월 30일

“위탁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매탄동)

대표이사 권 오 현 (인)

“수탁자”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번지

대표이사 이 재 현 (인)



별첨1.

유지보수업무 수행계획

1. 유지보수 업무의 대상 및 내용

- 가) “본 계약에서 “설비”는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원익홀딩스社가 제조한 반도체 및 LED 공정 Specialty Gas 공급장치으로서 이미 구축된 설비뿐만 아니라 새롭게 구축될 설비를 포함한다.
- 나) “수탁자”가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장애복구
 - 예방점검
 - 설비의 개조 개선
 - 부품의 교체 및 수리
 - S/W, H/W 업그레이드 작업
 - 업무 수행 후 작업결과보고서 제출
 - “위탁자”가 요청할 경우 고장분석보고서 제출
 - 예비 부품 리스트 작성
 - 기타 “위탁자”가 요청하는 사항
- 다) 유지보수의 방식은 On-Call Service이며, “수탁자”的 Service Engineer는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기술과 자격 기준을 갖춘 Engineer여야 한다.
- 라) 예방점검(Preventive Maintenance)의 경우 정기적으로 보수 및 점검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Line Shut Down시 예방점검은 규정, 추석 등 명절도 포함하여 실시한다. 예방점검의 상세 스케줄 및 소요시간은 “위탁자”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수탁자”측 Service Call 접수 담당자

: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상대방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함

성명	최진호
e-mail	jhchoi@wonikholdings.kr
전화번호	031-659-2113
FAX 번호	031-781-3768
주소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번지

바) “위탁자”측 담당자

: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상대방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함

부서	GCS 운영그룹
성명	최윤호
e-mail	Yunho3.choi@samsung.com
전화번호	031-8000-2748
FAX 번호	



주소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	---------------------------

2. 유지보수업무 실시방법

가) 원격지원 및 유지보수계획통보

- 평일: Call 접수시로부터 2시간 이내
- 주말 및 공휴일: Call 접수시로부터 4시간 이내
- 기타: 담당자 간 협의

나) “수탁자”의 유지보수업무 착수시간

- 평일: Call 접수시로부터 4시간 이내
- 주말 및 공휴일: Call 접수시로부터 8시간 이내
- 기타: 담당자간협의

다) “수탁자”는 업무 대응이 24시간 내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탁자”는 유지보수 업무에 착수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업무의 완료 기준은 ‘정상가동상태’로 한다. 다만 환경안전 문제 및 부품 배송 문제 등 예외적 상황의 경우 업무 완료 시간은 별도로 협의한다.

마) “수탁자”는 업무 완료 후 “작업결과보고서”를 72시간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바) 업무수행인력은 최소 1명 이상(단, 위험작업은 2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설비 유지보수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또는 50%) 이상 투입한다.

사) 유지보수 업무에 착수 한 때로부터 72시간 내에 유지보수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본사 등에 Engineer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다.

아) “수탁자”가 나)항을 위반한 경우 그 자연 시간만큼을 해당 작업의 실제 작업시간에서 감하여 정산한다.

자) “수탁자”가 72시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위탁자”는 이후 작업시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차) “수탁자”가 유지보수업무를 완료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일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나), 다), 라), 마)항의 시간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카) 설비의 무상보증기간 내에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탁자”는 작업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타) 부품 교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가 교체한 부품의 기능 보증 기간은 교체 시로부터 6개월로 하되, 소모성 부품인 경우에는 해당 부품의 유수명에 따른다. 다만 “위탁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파) “위탁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부품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공급하는 부품과 동일한 규격이어야 한다.

3. 안전사항 및 보안사항 준수



- 가) “수탁자”측 인력은 “위탁자”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 수행 시 “위탁자”가 정한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 나) “수탁자”측 인력은 “위탁자”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경우라도 “위탁자”가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단, 타 장소에 유지보수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장소로의 이동만 진행한다.
- 라) Operation Unit을 조작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엔지니어 입회 하에 조작하여야 하며, 공정별 GAS 유량, CHEMICAL 유량, GAS 비율, TIME, RECIPE 내용 등 공정 조건을 수기 또는 저장매체 등을 이용해 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SAMSUNG ELECTRONICS

08080157

1.1

1694691475042057



별첨2.

대금지급조건

1. 대금지급 조건

가) 작업비

요일별	비 고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시간 기산점 : 실제 업무 장소에 입실 및 퇴실한 시점 기준, Line의 경우 Line에 입실 및 퇴실한 시점 기준 * 업무 대기(이동)시간 1Hr/件당 추가- 국내출장비, 식비, 교통비 추가지급 여부: 미지급- 중식, 석식 시간 제외 여부: 제외
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B,CSF 작업 (방진복 착용 限) : 기본 단가의 1.3배- 기계실 작업 (CCSS Room, Gas Room, FSF, UT등 등) : 기본 단가의 1.2배- 고소 작업 : 비계 有, 10~20m 작업 시 기본단가의 1.1배 비계 有, 20m 이상 작업 시 기본단가의 1.2배 비계 無, 5m 이상 작업 시 기본단가의 1.2배- 유해위험 작업 : 반신 내화학복 착용 작업 시 기본 단가의 1.1배 전신 내화학복 착용 작업 시 기본 단가의 1.2배- 할증 합계 Max 40%, 유해위험 할증 별산 가능
주말 및 공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단가 (09:00~18:00) : 32,000원/Hr (부가가치세 별도)- 시간외 (18:00~익일 09:00) : 평일 기본 단가의 1.5배 (48,000원/Hr) (부가가치세 별도)

나) 부품비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다.

2. 작업결과보고서 제출 및 대금 지급



“수탁자”는 업무를 완료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업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결과보고서 작성 기한: 작업완료 후 72시간 이내

나) 작업결과보고서 기재 내용

① 원인→분석→조치→Test 결과, 작업 인원 등 세부 작성

② 업무 수행내용 기재 단위: 1시간 단위로 수행내용 작성

③ “작업결과보고서” 작성 후 “위탁자” 즉 담당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을 것

④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대금 정산서 또는 견적서 제출

다) 검수: “위탁자”는 작업결과보고서를 검수한 후 “수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위탁자”가 “작업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라) “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위탁인”的 검수 합격 통지 후 “수탁인”이 세금계산서(정산에 필요한 자료 첨부)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면, “위탁인”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인”的 대금지급규정에 따라 “수탁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단, 대금의 지급일은 “수탁인”이 유지보수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별첨3.

작업결과보고서

아래 작업자는 다음과 같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유지보수 업체		의뢰인	
작업자	(인)		
작업자 자격	위 작업자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인가? (Y / N)		
접수일시		접수시간	
작업일시		작업라인/공정	
모델		설비명 / 번호	
시작시간 (작업장 입실 기준)		종료시간 (작업장 퇴실 기준)	
접수내용			
작업부위			
문제발생원인			

시작시간	작업	휴식	작업내용 (상세히 기재)
:			
:			
:			
:			
사용 부품	규격	수량	S/N
:			
작업 시간 / 개수	작업구분	사용 TOOL	
() Hr / () EA	완료 () 미완료 ()		

※ 추가 기술 사항 (업무 수행 중 특이사항, 필요시 도면, 사진, 그림 등) 이 있으면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바랍니다.



별첨4.

비밀보호서약서

아래 참여자는 본 계약서 제14조(비밀유지) 조항을 세심히 읽어 보았으며,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혹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정보보호 정책과 관련된 내부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No	부서명 (Department)	부서장 (Manager)	참여자 (Participant)	서명/印 (Signature)	비고 (Remark)
1	TGS부록	김재빈 전무	최진호		
2					
3					
4					
5					



SAMSUNG ELECTRONICS

08080157



별첨5.

자료 제출 요청서			
* 설비유지보수계약서(ON-CALL)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정보			
신청자	김주옥	부서	지원팀
전화번호	010-3039-1376	요청일자	2016년 10월 1일 ~2017년 9월 30일
◎ 업체 정보			
업체명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담당자	최진호
◎ 자료의 사용목적			
1. 제조 등 위탁여부의 판단 2. 부품 채용 승인을 위한 평가 3. 품질보증 및 하자의 원인 파악 4. 물품 등의 개선점 발견 및 개선책 마련 5. 시설현대화, 생산공정개선, 기술개발, 품질향상 6. 원산지 확인 / 환경유해물질의 포함 및 사용 여부 확인 7. 안정적 수급을 통한 생산의 지속적 보장 8.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정보 공유 9.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주문품의 기준가격을 마련하기 위한 개략적인 원가 내역			
◎ 제출자료			
위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관련 자료 (예: 감사보고서, 승인원, 업체현황서, 품질관리 현황서, 각종 시험성적서, 보안관리 현황서 등) ※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현장실사 등)를 상호 협의 하에 취할 수 있습니다.			
◎ 인도일 및 인도방법			
1. 인도일 : 관련 자료 발생시 2. 인도 방법 : 서면, 파일, 동영상 등			
◎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1. 제출자료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은 귀사 또는 원권리자에게 귀속합니다. 2. 위 제출자료는 모두 물품 등의 제조 등 위탁과 관련한 자료로서 당사와 귀사간의 경쟁력 향상 및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제조 등 위탁비 외에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3. 당사는 귀사가 제출한 자료를 그 정해진 목적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자료사용에 관한 합의서(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하겠습니다.			
◎ 비밀유지			
당사는 귀사가 제공한 자료 중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비밀로 유지하고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2)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 3)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 4) 귀사가 '대외비' 등의 표시를 통해 해당 자료가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 자료임을 명확히 밝힐 것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원익홀딩스는
위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오 현 (인)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대표이사 이 재 현 (인)

SAMSUNG ELECTRONICS

08080157

17

1694691475042057



계약변경합의서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위탁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원익홀딩스(이하 "수탁인"이라 한다)는 2015년 10월 01일 "위탁인", "수탁인"간 체결한 업무위탁계약[Gas Monitoring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이하 "기존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 다 음 -

제 1 조 (목적)

본 합의서는 "위탁인", "수탁인"간 체결된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명시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변경사항)

① "위탁인"과 "수탁인"은 "기존 계약"의 제2조 제1항 본문에 명시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본 계약 업무위탁의 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위탁인"과 "수탁인"은 기존 계약의 "별첨 2. 위탁비 세부 변동 내역"에 본 합의서內
첨부된 "위탁비 세부내역"을 변경 하기로 합의한다
첨부1 : 위탁비 세부 변동 내역

③ "위탁인"과 "수탁인"은 기존 계약의 별첨2. "위탁비 세부내역"을 본 합의서의
첨부. "위탁비 세부내역"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제 3 조 (합의서의 효력)

① 본 합의서는 2016년 10월 0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계약"의 내용에 따르며, 본 합의서 상의 내용이 "기존 계약" 상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본 합의서의 효력이 우선한다.

첨부. "위탁비 세부내역"



162791475104158

위와 같이 합의서가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인", "수탁인"은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매탄동)

대표이사 권 오 현 (인)



2016년 9월 30일

"수탁인"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33, 칠과길
78-40

대표이사 이 재 현 (인)



첨부1. 위탁비 세부 변동 내역(VAT 별도)

No	품목코드	품명	규격	단위	계약단가(원)
1	DC024101-000159	COMMUNICATION CABLE	BELDEN 9207	Meter	4,350
2	DC025104-000737	CONDUCT-PIPE	26.5mm/2.3mm/1.37kg/m	Meter	3,220
3	DC025104-000738	PIPE COUPLING	22mm	Each	530
4	DC025104-000739	PIPE BUSING	22mm	Each	160
5	DC025104-000740	PIPE LOCK-NET	22mm	Each	110
6	DC025104-000741	C-CHANNEL-CLAMP	22mm	Each	360
7	DC025104-000742	GW(일반방수)	22mm	Meter	1,040
8	DC025104-000743	straight connector	22mm	Each	950
9	DC025104-000744	straight connector(-)	22mm	Each	950
10	DC025104-000745	PIPE-UNION	22mm	Each	4,740
11	DC025104-000746	C-CHANNEL	41*25*2.5t	Each	4,820
12	DC025104-000747	BEAM-CLAMP	22mm	Each	530
13	DC025104-000748	PIPE-PBC(COUPING)	22mm	Each	1,640
14	DC025104-000749	EXPLOSION-PROOF FLEXIBLE	22mm	Each	29,570
15	DC025104-000750	SWITCH BOX-O TYPE	22mm*3way	Each	3,580
16	DC028109-000664	중간 허브	HP-NJ2000G	Each	450,000
17	DC028109-000666	OMRON_CS_BASE	CS1W-BI083	Each	338,000
18	DC028109-000667	OMRON_CS_POWER	C200HW-PA204	Each	130,000
19	DC028109-000668	OMRON_CS_CPU	CS1H-65H	Each	2,020,000
20	DC028109-000669	OMRON_CS_ETN	CS1W-ETN21	Each	1,292,000
21	DC028109-000670	OMRON_CS_LINK	CS1W-CLK21	Each	305,000
22	DC028109-000671	OMRON_CJ_POWER	CJ1W-PA205C	Each	222,000
23	DC028109-000672	OMRON_CJ_CPU/ETN	CJ2H-CPU64H-EIP	Each	1,900,000
24	DC028109-000673	OMRON_CJ_CPU/ETN	CJ2H-CPU65-EIP	Each	2,226,000
25	DC028109-000674	OMRON_CJ_CPU	CPU45H	Each	1,180,000
26	DC028109-000675	OMRON_CJ_CPU	CJ1G-CPU44H(ATTO-CPU44)	Each	560,000
27	DC028109-000676	OMRON_CJ_ETN	CJ1W-ETN11(ATTO-ENET)	Each	974,000
28	DC028109-000677	OMRON_CJ_LINK	CJ1W-CLK21-V1(ATTO-LINK)	Each	313,000
29	DC028109-000678	OMRON_CJ_LINK	CJ1W-CLK23-V1(ATTO-LINK)	Each	418,000
30	LA009023-000007	노무비_이설	신규 Cable 공사(Gas Room)	Meter	35,500
31	LA009023-000008	노무비_이설	신규 Cable 공사(FAB)	Meter	14,990
32	LA009023-000009	노무비_철거	Cable 철거 공사(Gas Room)	Meter	14,180
33	LA009023-000010	노무비_철거	Cable 철거 공사(FAB)	Meter	6,020
34	LA009023-000035	Special Gas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Turn-key	Months	5,784,000

* 상기 위탁비는 실비 정산 항목을 제외한 안전관리비 및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